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의자 : 김용호 의원(찬성자 35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846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

2. 제안이유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내 화재위험성이 높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등에 대한 지원 종류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 (안 제1조)
- 나.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, “소방설비등”, “관계인”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함. (안 제2조)

- 다.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함. (안 제3조)
- 라.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마.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,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바.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)
- 사.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. 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‘화재예방강화지구’에 대하여 안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‘소방시설 등’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,
- ‘소방시설등’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화재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할만 하다 하겠음.

[표 1] 조례안 주요내용

조문별	주요 내용								
제1조(목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								
제2조(정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, “소방설비등”, “관계인”的 용어 정의- “소방설비등”은 「소방기본법」과 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별표 1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 분</th><th>소방설비등 종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소방용수시설</td><td>소화전, 비상소화장치</td></tr><tr><td>소방시설</td><td>소화기구, 단독경보형감지기,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유도등</td></tr><tr><td>안전시설</td><td>누전차단기,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</td></tr></tbody>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“관계인”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·점유자	구 분	소방설비등 종류	소방용수시설	소화전, 비상소화장치	소방시설	소화기구, 단독경보형감지기,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유도등	안전시설	누전차단기,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
구 분	소방설비등 종류								
소방용수시설	소화전, 비상소화장치								
소방시설	소화기구, 단독경보형감지기,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유도등								
안전시설	누전차단기,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								
제3조(시장의 책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함.								
제4조(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다음 각 호의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(다만, 제2호는 심사 필요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								
제5조(지원심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,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.								
제6조(지원방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 방법 규정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								
제7조(환수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신청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.								
부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								

■ 서울시내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

- ‘화재예방강화지구’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‘화재예방법’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¹⁾에 따라 시장에게 시장지역,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,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,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는 시장지역 6개소, 공장밀집지역 2개소, 목조밀집지역 11개소, 창고밀집지역 1개소 등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음. ([표2] 참조)

[표 2]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: 20개 지역 (총 2,822동, 940,421.04m²)

(단위: 지구)

서 대상	계	종로	중부	동대문	영등포	성북	강남	마포	송파
	20	9	3	1	3	1	1	1	1
시장지역	6	2	1	1	1	-	-	1	-
공장밀집지역	2	1	1	-	-	-	-	-	-
목조밀집지역	11	6	1	-	2	1	1	-	-
창고밀집지역	1	-	-	-	-	-	-	-	1

- 1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1. 시장지역
 2.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
 3.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
 4.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
 5.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
 6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 8. 소방시설·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
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 - ② ~ ⑥ 생략

- 참고로, 최근 5년간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총 68건이 발생했으며, 연도별 발생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.

[표 3] 화재발생 현황

구 분 (연도별)	발생건수	인명피해(명)			재산피해 (천원)
		계	사 망	부 상	
계	68	3	0	3	4,198,799
2023.1.1.~ 4.30.	9	0	0	0	1,084,797
2022년	24	0	0	0	186,250
2021년	8	1	0	1	870,034
2020년	13	1	0	1	2,008,316
2019년	14	1	0	1	49,402

■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현황

- ‘화재예방강화지구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「화재예방법」 제19조 제3항²⁾에 따르면, 시·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“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현재 10개 시·도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조

2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)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소방설비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종류는 조금씩 상이함.

[표 4]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조례명	시행일자	담당부서
1	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1. 2.	재난예방과
2	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2. 28.	예방안전과
3	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	2023. 2. 24.	예방안전과
4	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5. 17.	재난예방담당관
5	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5. 11	예방안전과
6	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2. 28.	대응예방과
7	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2. 12. 9.	방호예방과
8	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2. 8.	대응예방과
9	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4. 24	예방안전과
10	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2. 1.	예방안전과

■ 주요골자별 의견

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,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, “소방설비등”, “관계인”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.
- “화재예방강화지구”는 「화재예방법」 제18조제1항³⁾에 따라 시장에

3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1. 시장지역
2.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
3.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
4.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
5.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
6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
게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- 다음으로, “소방설비등”은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2항⁴⁾에 따른 소방용수시설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, 그 밖의 누전 및 가스차단기 등의 안전시설을 안 별표1에 그 해당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,
- “관계인”은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· 관리자 · 점유자로 정의하고 있음.

[표 5] <별표 1>의 소방설비등

구 분	소방설비등 종류
소방용수시설	소화전, 비상소화장치
소방시설	소화기구, 단독경보형감지기, 화재알림설비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가스누설경보기, 유도등
안전시설	누전차단기, 가스차단기 등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설비

-
- 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 - 8. 소방시설 ·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
 - 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 - ② ~ ⑥ 생략

- 4)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(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)
① 시 ·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(消火栓) · 급수탑(給水塔) · 저수조(貯水槽)(이하 “소방용수시설”이라 한다)를 설치하고 유지 ·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수도법」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, 그 소화전을 유지 ·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시 ·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(이하 “비상소화장치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유지 · 관리할 수 있다.
③ 생략

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,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,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- 이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,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하려는 것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감소라는 궁극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

다.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, 시장에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'소방설비등 설치 비용'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그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지원범위는 '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'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,
 - 이는 무분별한 설치요청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여 예산 낭비 방지와 정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여겨짐.

라. 지원심사 및 방법 등 (안 제5조, 제6조)

- 안 제5조는, 소방설비등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신청 방법, 건축물관리 대장 및 설치비용 산출근거 자료 등 관계인의 제출서류,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는,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'신청인이 직접 설치하고 시장이 설치 확인한 후 비용 지급 방법'과 '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설치 하는 방법'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설치 여건과 환경이 상이한 만큼 신청인 입장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신청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등의 규격품 사용여부와 설치 위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살펴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,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설치 확인을 위한 매뉴얼을 별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마. 환수조치 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, 시장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명하도록 하고,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음.

-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조치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환수조치는 부정한 수급자에 대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행정조치로 사전에 환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단계부터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 등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적법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바. 경과조치 (부칙안)

- 부칙안에서는, 조례의 적용과 관련해 ‘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원신청자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이라 이해됨.